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에 유해한 화장품 광고 문구에 관한

장관령

불기 2567년(서기 2024년)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 제5조 첫번째 단락 및 제41조 두번째 단락 제7항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보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장관령을 공고한다.

아래의 화장품 광고 문구는 제41조 두번째 단락 제7항의 정의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에 유해할 수 있는 문구로 간주한다.

- 인체 내 사용을 암시하는 문구(단, 탐폰 광고에 사용되는 문구 또는 치아 · 구강점막에의 적용을 암시하는 문구는 제외).
- 주사되거나, 인체 내부로 침투하는 기구 · 장치와 함께 사용됨을 암시하는 문구, 또는 표피보다 깊은 신체 부위로 물질을 주입하는 기구 · 장치와 함께 사용됨을 암시하는 문구.

2024년 11월 20일 공고

씀싹 텁수틴

보건부 장관

비고: 본 장관령의 공포 이유는 현재 화장품 광고 중 일부가 치료, 증상 완화, 치유 또는 질병치료 효과가 있다고 표시하거나 청결, 미용 또는 외모 변화 이외의 목적으로 신체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고는 2015년 화장품법 제41조 두 번째 단락 제7항에 따라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 장관령을 공고한다.